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을 증원하고,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한 기구 2국(광역교통정책국, 광역교통운영국), 5개과(광역교통정책과, 광역버스과, 광역교통경제과, 광역교통도로과, 광역환승과) 및 정원 40명(고위나급 2명, 3급 또는 4급 1명, 4급 4명, 4급 또는 5급 1명, 5급 16명, 6급 16명)을 그간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68”을 “69”로, 일반직 계 “67”을 “68”로, 행정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·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“24”를 “25”로 한다.

별표 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7조(평가대상 조직) 위원회에</u> <u>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</u> <u>사항은 별표 2와 같다.</u>	<u><삭 제></u>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]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6조제1항 관련)

직	급	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.		.	.	
			<u>68</u>	<u>69</u>	+1
	.		.	.	
	.		.	.	
일반직 계			<u>67</u>	<u>68</u>	+1
	.		.	.	
	.		.	.	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재안전주사 ·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			<u>24</u>	<u>25</u>	+1
	.		.	.	
	.		.	.	